

1. 개정이유

개정 전자서명법 시행('20. 12. 10.)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'공인인증서'라는 용어를 '인증서'로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변경(안 제11조제2항제4호)

- 1)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('20. 12. 10.)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'공인인증서'를 '인증서'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진행 예정('21. 4. 27. ~ 5. 7.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진행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없음

총리령 제 호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 후단 중 “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”를 “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) ① (생략)	제11조(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예치기관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신청·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하여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----- -----.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